



"기획은 공정하게/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공일 : 2012. 6. 8.

제공자 : 농림수산물부 어업정책과

과 장 : 강 인 구

서기관 : 심 상 겹

전 화 : 500-2363

쪽 수 : 3P

별첨자료 : 1P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6월 1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어선관련 민원절차가 간편해진다

- 어선 변경등록과 어업 변경허가 민원신청 통합 등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어선 변경등록과 어업 변경허가 민원신청 통합

-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총톤수 등이 변경되어 어선등록 및 어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 민원신청 가능

* 어선변경등록 신청 : 연간 약 7,000건

□ 어선등록 및 어선관련증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감축

- 어선등록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제출 생략
- 어선관련증서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 생략

* 어선건조허가 : 연간 약 2,000척, 어선관련증서 재발급 : 연간 약 1,200건

□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제도 폐지

- 어선등록사항 착오가 있는 경우 별도 정정신청서 제출없이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

* 어선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연간 약 100여건

□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합

- 「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」을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으로 통합

- 농림수산물부는 어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어선관련 민원제도를 어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6. 7일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을 개정·공포했다.

- 그 동안 어업인들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어선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마친 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였으나, 앞으로는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 변경허가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관청 재방문에 따른 어업인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.

- 또한, 어선의 건조허가 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은 시·군·구인 경우에는 어선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(어선건조허가서,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, 선박등기부등본) 중 어선건조허가서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였다.

- 그리고, 어선의 등록사항에 경미한 착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등록정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나, 앞으로는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- 선박국적증서 등 어선관련 증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

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, 분실 사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.

- 이와 함께,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개선을 위해 「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」을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-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편의 제고 차원에서 어업분야 규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참 고>

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- **어선 변경등록 및 어업 변경허가 민원신청 통합**
 - 어선등록기관과 어업허가처분기관이 동일(시·군·구)한 경우 어선의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 변경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시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함께 신청 가능
 - ★ 어선변경등록 신청 : 연간 약 7,000건
- **어선등록 및 어선관련증서 재발급 시 구비서류 감축**
 - 어선건조허가 관청에 어선등록 시 어선건조허가서 제출 생략
 - 어선관련증서의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제출 생략
 - ★ 어선건조허가 : 연간 약 2,000척, 어선관련증서 재발급 : 연간 약 1,200건
- **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제도 폐지**
 - 어선소유자가 어선등록사항 중 경미한 정정사항(오탈자) 발견 시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만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(별도 정정신청서 제출 생략)
 - ★ 어선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: 연간 약 100여건
- **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합**
 - 「어선법」 하위법령인 「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」을 「어선법 시행규칙」에 통합하여 일원화
 - ★ 통폐합 법령 :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+ 「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」